

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1059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조현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하영

피고A

변론 종결2024. 4. 16.

판결 선고2024. 4. 30.

주 문

1. 피고와 망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91,314,7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3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2022. 11. 7. 사망)는 국세채납자이고, 피고는 B의 자녀이다.

나. 망 B의 국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2017.1기	2021.06.30.	2,725,640	3,216,200	2017.06.30.	창원
2	부가가치세	2017.1기	2021.09.30.	4,447,660	5,148,030	2017.06.30.	통영
3	부가가치세	2017.2기	2021.06.30.	3,342,230	3,943,690	2017.12.31.	창원
4	부가가치세	2017.2기	2021.09.30.	3,057,650	2,172,730	2017.12.31.	통영
5	종합소득세	2017년	2022.06.30.	7,856,500	8,563,550	2017.12.31.	창원
6	부가가치세	2018.1기	2021.06.30.	7,316,460	8,633,350	2018.06.30.	창원
7	부가가치세	2018.1기	2021.09.30.	4,415,730	5,111,070	2018.06.30.	통영
8	부가가치세	2018.2기	2021.06.30.	10,838,780	12,789,740	2018.12.31.	창원
9	부가가치세	2018.2기	2021.09.30.	5,317,470	6,154,950	2018.12.31.	통영
10	종합소득세	2018년	2022.06.30.	32,643,620	35,581,480	2018.12.31.	창원
11	부가가치세	2019.1기	2021.06.30.	8,199,090	9,674,860	2019.06.30.	창원
12	부가가치세	2019.1기	2021.09.30.	6,492,900	7,515,410	2019.06.30.	통영
13	부가가치세	2019.2기	2021.06.30.	4,983,140	5,880,030	2019.09.30.	창원
14	부가가치세	2019.2기	2021.09.30.	4,506,940	5,216,740	2019.09.30.	통영
15	종합소득세	2019년	2020.10.31.	3,541,220	4,390,850	2019.12.31.	창원
합계	109,685,030	123,992,680					

다. 망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12. 자녀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표 1>의 순번 1 내지 7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위 <표 1>의 순번 8 내지 9의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채권, 순번 10의 2018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지만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② 이러한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채권들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망 B가 적극재산 전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를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원상회복 방법

그런데, 피고는 2019. 8. 21. 과 2021. 6. 22.경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각 채무자 A(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C조합(D지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물반환이 곤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합계 91,314,790원을 초과함은 당사자 사이에 별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1,3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동호

별지